

의안번호	2213553
의 퇴 인	안태준의원
회 답 일	2025.12.8.
추 계 번호	25B536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유 및 <u>공유재산</u> 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 시설의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유 및 <u>공유재산</u> 의 무상대부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 시설 개량사업을 위하여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역 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전국 역사별 개량사업 계획과 해당 시설이 점유하게 될 공유재산의 면적, 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여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한국철도공사의 국유재산 대부 현황은 [참고자료]와 같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에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한국철도공사 국유재산 대부현황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한국철도공사 국유재산 대부현황]

역명	면적(m ²)	공시지가	자산가액 (면적(m ²)×공시지가)	점용료(연)
망월사역	7,279.28	565,100	4,113,521,128	205,676,056
구로역	12,601.00	2,488,000	31,351,288,000	1,567,564,400
가산디지털단지역	9,238.70	1,573,000	14,532,475,100	726,623,755
석수역	9,701.39	218,900	2,123,634,271	106,181,714
명학역	9,562.60	337,200	3,224,508,720	161,225,436
화서역	10,424.73	247,500	2,580,120,675	129,006,034
밀양역	8,213.49	47,600	390,962,124	19,548,106
구포역	2,738.25	2,042,000	5,591,506,500	279,575,325
사북역	237.00	165,600	39,247,200	1,962,360
목호역	135.00	165,600	39,247,200	1,962,360
청도역	202.00	136,500	18,427,500	921,375
합계	70,333.44		64,004,938,418	3,200,246,921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